


# OnLine 중재상담실

##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자격

지난 10월 3일, 모 신문사에서 추석특집 영화를 소개하면서 "(전략) 안토니오 반데라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지만 TV 방영분에선 성우가 더빙을 다시 하니 그 재미는 접어두시길.(후략)"이라는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더빙을 다시 하니 재미를 접어두라"는 이 문장은 성우라는 직업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제가 성우지망생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경우 제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할 수 없다면 한국성우협회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구해야 합니까? 또 기사 속의 짧은 한 줄이지만 이 내용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우선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보도에 언급이 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때문에 귀하가 성우 지망생이라는 이유로 위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한편, 위 기사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 평가성이 짙은 기사이고 전체 성우들의 명예

를 훼손시켰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성우협회 측에서의 정정보도 청구 또한 불가능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정보도청구는 짧은 한 줄에 포함된 내용이라든가 본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글을 동의 없이 인용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수강신청에 관련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OO내일'이라는 잡지에 저희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했던 글의 일부(닉네임, 실명 포함)가 인용됐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기사에 제 글이 인용되어 불쾌한 마음에 문의를 한 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닉네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게시판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과 같아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의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이 인용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게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글이라면 학교 홈페이지의 글이더라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라면 언론사가 면책될 수도 있으므로 본 사안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00)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상담 및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의 무허가 촬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창녕에서 수출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오늘 중으로 선적할 물품들이 있어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중 한 지역신문에서 기자와 고철업자가 찾아와서는 저와 담당자가 없는 사이에 사진을 무더기로 찍어 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재에 나섰지만 기자와 고철업자의 횡포가 심해서 저희 직원들도 말리다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오늘 선적해야 할 물품이 출발하지 못하고 지연됐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촬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기자가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 때문에 생긴 오늘의 손해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동의 없이 촬영을 한 신문사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우선 이 사안에서 단순히 무허가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나 언론사에게 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 역시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있었느냐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촬영한 자료가 추후에 보도되어 명예훼손 당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 명의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엇보다 취재분이 보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신청을 원하신다면 조정신청서 양식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 게재**

언제 찍힌 지도 모르고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제 뒷모습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상반신부터 신발까지 뒷모습만 올려놓은 사진인데 그 내용이 불쾌했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이라는 주제로 잡지사 측에서 임의로 옷을 잘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놓고 제 옷차림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통해 사진이 게재된 것을 알고 잡지사에 연락을 했더니 "정면 얼굴이 사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불친절하게 저의 항의에 대해 대응을 했습니다.

해당 잡지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뒷모습이 찍혔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귀하를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으며 귀하는 저희 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피신청인은 해당 기자가 아닌 언론사가 될 것이며 조정신청을 원하신다면 조정신청서 양식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세요. □